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16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김영진 · 허 영 · 이연희
이해식 · 차지호 · 김 윤
안태준 · 소병훈 · 서삼석
이정현 · 염태영 · 진성준
권칠승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

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진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4. 대상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5. 동물학대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공개정보의 등록·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개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개정보의 등록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동물학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공개대상자의 공개정보 등록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정보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반려동물 취득 시 확인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동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공개대상자인지 그 여부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자에게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공개 및 공개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신상정보의 공개) ①</u> <u>법원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u> <u>까지를 위반하여 두 차례 이상</u> <u>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u> <u>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u> <u>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u> <u>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u> <u>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대</u> <u>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u> <u>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u> <u>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u> <u>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u> <u>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u> <u>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 <u>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u> <u>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u> <u>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u> <u>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u> <u>정된 때부터 기산한다.</u> <u>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u> <u>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u> <u>하지 아니한다.</u>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신 설>

제공되는 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진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4. 대상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5. 동물학대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공개정보의 등록·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개대상자의 공개정보

<신 설>

를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개정보의 등록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동물학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공개대상자의 공개정보 등록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정보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반려동물 취득 시 확인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동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공개대상자인지 그 여부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자에게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u>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 자</u> <u>3.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 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u>
--	---